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. 5. 12 선고 2016가단48520 판결 [계약보증금 등 청구]

전 문

원고평택시

피고건설공제조합

변론 종결2017. 4. 7.

판결 선고2017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4,247,940원 및 이에 대한 2016. 10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태평아파트-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의 발주자이고,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미래공영 주식회사(이하 '미래공영'이라 한다)를 위하여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을 하여 준 조합이다.

나. 원고는 2015. 4. 9. 미래공영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84,357,500원, 공사기간 2015. 4. 15.부터 2016. 4. 13.까지(365일)로 정하고, 계약보증금 72,653,630원에 대하여 계약보증서를 제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공사도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미래공영은 ① 2015. 4. 10.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72,653,630원, 보증기간 2015. 4. 10.부터 2016. 4. 13.까지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제출하였고,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1억 7,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5. 4. 29. 피고로부터 위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보증금액 179,572,000원, 보증기간 2015. 4. 29.부터 2016. 6. 12.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, 이에 따라 원고는 2015. 4. 30. 미래공영에 선급금 1억 7,000만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미래공영은 2015. 4. 13. 천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. 4. 15.경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.

마. 그런데 원고는 2015. 5. 28. 미래공영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'방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개설공사 협의진행'을 이유로 공사중지 통보를 하였다.

바. 미래공영은 2015. 11. 3. 부도가 발생하였다.

사. 원고는 2016. 2. 12. 미래공영에게 '2016. 2. 22.까지 재착공신고(감독관 경유)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를 통한 변경계약에 합의하여 달라'고 통지하였고, 2016. 3. 4.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으나, 미래공영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.

아. 원고는 2016. 4. 8. 미래공영에 '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1)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'고 통보하였다.

자. 피고는 2016. 7. 7. 원고에게 선급금보증금 168,673,470원(=원고가 미래공영에 지급한 선급금 1억 7,000만 원 - 타절기성검사 결과 확인된 기성금 1,326,530원)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계약상대방인 미래공영의 부도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되어 원고의 2016. 4. 8.자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서 및 선급금보증서에 따라 계약보증금 72,653,630원과, 원고가 미래공영에 지급한 선급금 중 원고가 구하는 168,673,470원에 대한 2015. 4. 30.부터 2016. 7. 7.까지 연 5%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 1,594,310원(=168,673,470원 × 연 5% × 69/365)의 합계 74,247,940원(=72,653,630원 + 1,594,31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

가. 계약보증금청구 부분에 관하여, 미래공영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먼저 해지되었다는 주장

피고는 미래공영이 2015. 11. 11. 원고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5-가-2)에 따라 계약해지를 이미 통지하였고, 위 2015. 11. 11.은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점(2015. 5. 12.자 타절기성검사 결과 기성율 0.27%), 원고가 공사중지 해지사유로 기재한 보상미협의 건물은 착공 당시부터 공사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착공일자인 2015. 4. 15.부터 기산하여 공기의 50/100인 183일(2015. 10. 14.)이 도과한 날짜이므로, 피고는 계약보증약관 제2조 제4호, 제5조에 따라(변론종결 후에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) 계약보증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5, 6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,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미래공영이 2015. 11. 11. 원고에게 '원고의 사정에 의한 공사중단 지시에 따라 2015. 4. 15.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단되어 있고, 공사 중지일수가 현재 전체 공기의 50/100을 초과하였으므로,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5-가-2)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'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나아가 계약상대방인 미래공영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, 공사감독관이 일정한 경우 공사 이행을

정지시킨 경우에 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/100을 초과하여야 하므로, 원고의 2015. 5. 28.자 공사중지 통보 시점부터 공기의 50/100인 183일(2016. 11. 26.)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한 2016. 11. 11. 이루어진 미래공영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계약보증금청구 부분에 관하여, 묵시적 합의해지 주장

피고는 미래공영이 2015. 11. 11.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중지일인 2015. 5. 28.부터 기산하여 공기의 50/100인 183일(2015. 11. 26.)이 도과한 2015. 11. 27.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2015. 11. 27.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2015. 11. 19. 미래공영에게 '귀사가 계약해지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일수가 전체 공기의 50/1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'라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).

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.

다. 선금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계약상대방인 미래공영에 의하여 2015. 11. 11. 해지되었거나, 사정변경에 따라 2015. 11. 27. 묵시적 합의해지 되었으므로,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5-나, 4-라의 규정에 따라 선금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계약상대방인 미래공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4,247,9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. 10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며,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정도성

별지

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6. 계약상대자의 부도, 파산, 해산, 영업정지,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·인가·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동법 시행령 제91조(계약의 해제·해지 등 통지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.